의 안 번 호	제77호
의결 연월일	2020. 6. 22.

--- 논산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0년 6월 15일 구본선 의원 외 4명

나. 회 부 일 자 : 2020년 6월 15일

다. 상 정 일 자: 2020년 6월 22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
2. 제안 설명요지(제안 설명자 : 최정숙 의원)

□ 제안이유

○ 「건축법」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 20세대 미만으로 10년이 경과된 주택의 공용부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「논산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」를 제정, 열악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「건축법」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 20세대미만 사용승일 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지원 대상으로 정함(안 제2조)
- O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대상을 정함(안 제4조)
-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 (안 제5조)

-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: 생 략
- 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 략
- 5. 토론 요지 : 생 략
-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